

제 568 호

1976. 8 . 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

- 제 1600 호 :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..... 3
- 제 1601 호 :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운영규칙중개정규칙..... 5
- 제 1602 호 : 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개정규칙..... 5

◎ 고 시

- 제 17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일부변경승인..... 9
- 제 180 호 :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..... 10
- 제 181 호 : 도시계획 (재개발구역도로, 주차장) 결정및 변경지적승인..... 11

◎ 공 고

- 제 177 호 : 환치계획변경공람공고 12
- 제 17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3
- 제 179 호 : 위생업소영업허가지역재조정..... 20
- 제 179 호 (성동구공고) : 동공인신조 (개각) 공고..... 20

◎ 사 령

..... 21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기
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이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76.8.4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600 호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
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
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기금특별
회계설치조례 (이하 조례라 한다)
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
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기금특별
회계 (이하 특별회계라 한다) 의
운영에 관하여 세부시행사항을 규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) 특별회계의 운영에
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
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
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
직지정)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
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.

징수관	산업국장
분임징수관	상정과장
수입금출납원	상정계장
경리관	산업국장
분임경리관	상정과장
지출원	상정과장
임시전도자금출납원	산업국장

(징수관, 경리관) 이 필요에
따라 지정하는 자

제 4 조 (징수관의 직무위임) 징수
관은 분임징수관에 다음 각호에
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
하게 한다.

1. 농수산물 도매시장시설기금
(적립금) 의 징수결정
2. 파오납금의 반환

제 5 조 (출납원의 임무) 출납원은
매월 조정징수한 시설기금 수입
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소정의
장표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
한다.

제 6 조 (출납원의 사무인계) ①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1. 사무인계는 전임출납원의 전보 발령 전일현재로 하되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2. 전임출납원은 예치금 및 기타 관계문서에 의하여 예치금의 현재액조사서와 인계목록을 작성하고 후임출납원과 같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3. 제 2 호의 경우에 관리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인계에 참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관계장부와 인계목록에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도록 한다.

제 7 조 (특별회계설치구좌) 징수관은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업무를 취급하게 한다.

제 8 조 (시설기금지수방법) ①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부터

시설기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관은 대행자에 대하여 납기기한 납입금액,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을 기재한 별지제 1 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.

②대행자의 시설기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납금융 기관은 별지제 1 호서식의 영수증서에 수입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지출원인행위) 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10 조 (지급명령) 지출원이 경리관의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할 때에는 현금지급시에 지정한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"통상지급명령"에 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(인)

1976년 8월 4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601 호

서울특별시 상수도 시공업 운영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상수도 시공업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및 제 8 조를 삭제한다.

제 9 조중 제 8 호 및 제 9 호를 삭제하고, 제 10 호내지, 제 13 호를 제 8 호 내지 제 11 호로 한다.

제 17 조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 5 구역은 강남구 일원 서식 제 11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공업허가서 예치된 보증금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당해 예치자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 한다.

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규정 개정 규

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(인)

1976년 8월 4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602 호

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41 조의 2 제 1 항 및 지방잡직원 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(이하 '의사'라 한다.)의 급료 및 조정수당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임시직 의사의 종류 및 고용 방법) ①의사하 수련의(인턴 엑스텐 및 레지던트)와 일반의사(평의사 및 과장)로 하고 그 자격조건은 별표 1 과 같다.

②의사의 고용은 시장이 행한다.

다만, 시립병원에 두는 의사의 고용

권은 당해 병원장에게 내부 위임한다.

제3 조 (변상책임) 의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분실 및 도난당하였을 때는 변상책임이 있다. 다만, 불가항력의 사유 (천재지변, 실화 이외의 화재)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 조 (급료 및 수당) ①수련의의 보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일반의사의 월 급료액과 조정수당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그 계산은 급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.

③시립병원의 일반의사가 진료수입 및 진료인원등에 대한 목표량의 80%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실적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병원별 목표량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추세, 불가상승추세, 진료인원추세 기타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시장이 책

정하고 과별 세입목표량은 병원장이 이를 책정한다.

④퇴근 하였던 일반의사가 야간 응급진료에 중사한 때에는 1일 3,000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 조 (호봉 및 승급) ①의사의 호봉은 별표 4와 별표 5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한다.

②승급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하여 시행한다.

제6 조 (상벌) 의사의 상벌은 시장이 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수당 지급에 있어서 1976년 7월분 목표량의 측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별표 1						
임시직 의사의 종류별 자격요건						
구분		자격요건				
인턴및엑스텐		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자				
레지던트		인턴과정을 이수한후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자				
평의사		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받았거나 고용 예정과목의 레지던트 과목을 이수한자 또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(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달리 할수 있다.)				
과장		고용예정분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받은자 (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한 전문과목 표방을 받은자로 보할 수 있다.)				
별표 2						
일반의사의 월급료액및 조정수당						
구분		1호봉	2호봉	3호봉	4호봉	5호봉
평의사	급료	121,000	131,000	141,000	151,000	161,000
	조정수당	60,000	65,000	70,000	75,000	80,000
	계	181,000	196,000	211,000	226,000	241,000
과장	급료	165,000	175,000	185,000	195,000	205,000
	조정수당	80,000	80,000	85,000	85,000	90,000
	계	245,000	255,000	270,000	280,000	295,000

별표 3 일반의사의 실적수당 지급기준

구분	실적수당액
과배당 월목표액에 대한 세입실적액 80%이상~90%미만	10,000 원
90%이상 ~ 100%미만	20,000 "
100 " ~ 110 "	30,000 "
110 " ~ 120 "	45,000 "
120 " ~ 130 "	60,000 "
130 " ~ 140 "	75,000 "
140%이상	90,000 "

비 고

- (1) 진료목표량이 2종 이상인 때에는 각 목표량 달성비율의 평균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마취과, 임상병리과, 방사선과 및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당해 병원의 전체실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 시립남부병원, 아동병원, 정신병원 및 서대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100%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별표 4

임시직 의사 호봉사정배점기준

가. 학 위

학 위 별	학 사	석 사	박 사
점 수	10 점	20 점	50 점

나. 자 격

전문의 자격표방 허가 소지자는 50점을 가산한다. 다만, 전문의 제도가 없는 과에 대하여는 전문의 제도가 생길때 까지 과장에 한하여 20점을 가산한다.

다. 경 력

경력 1개월을 1점으로 하고 경력별 근무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점한다.

배점기준	갑 경 력	을 경 력	병 경 력	정 경 력
경 력	의과대학부속병원 외 국유학 서울특별시립 병원 보건의 (진료과 독이 동일한 경우)	보사부장관이 인정한 수련병원 국립병원 서울특별시립병원 보 건의소 (진료과목이 다 른 경우) 래지던트	군의료기관 도립병원 종합병원 인 턴	보건행정 의원개업 기 타
배점비율	100 %	80 %	60 %	40 %

별표 5										
임시 직의사 호봉사정기준										
직급 별 호봉기준	경 의 사					과 장				
	1	2	3	4	5	1	2	3	4	5
배 점 수	47 점 이하	48 점 이상	72 점 이상	96 점 이상	120 점 이상	131 점 이하	132 점 이상	156 점 이상	180 점 이상	204 점 이상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5px;">고 시</div>						<p>공사완료된 위치도 지적일부 변경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(73.4.4)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7.31. 서울특별시장</p>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9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일부 변경 승인</p> <p>1. 건설부 고시제 2948 호(66.12.17)로 지적승인된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공사 완료된 일부 구간을 다음과 같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지적 변경 조서</p>		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지적변경연장	지적변경기점	지적변경종점	비 고		
기정	중로	1	47	20m	200 m	도봉구수유동	도봉구수유동 392-51 앞			
변경	"	"	"	"	"	"	"	397 의 51 측 으로위치변경		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. 끝.						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0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18 호 (76. 5. 27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 4. 4.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8. 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양재천 및 탄천제방 축조 공사
- 3. 사업 규모 :
 - 1. 재방연장 = 1,250 m
 - 2. 호안부력 = 6,500 m
 - 3. 기타 부대공 1 식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5. 착수및 준공예정일 : 1976.7.21 - 1977. 6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사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1호

도시계획(재개발구역도로, 주차장) 결정 및 변경 지적 승인

1. 건설부고시제 104 호 (76.7.14) 로 변경 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(재개발 구역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(73.4.4.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또한 관련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 (도로 , 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8. 4.

서울특별시장

1. 장교 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 지적 승인 조서

당 초			변 경		
지구명	위 치	면 적	지구명	위 치	면 적
전 체	서울중구 장교동 일대	43,900 m^2	전 체	서울중구 장교동 일대	43,900 m^2
장교 1지구	중구 장교동 62 일대	5,800	장교 1지구	중구 장교동 62	5,800
" 2 "	" 63-1 "	10,800	" 2 "	" " 63-1	10,800
" 3 "	" 장교동	10,400	" 3 "	" " 51	10,400
" 4 "	" 을지로 2 가 88-5	8,600	" 4 "	" 을지로 2 가 88-5	1,856
" 5 "	" 장교동 22-7	5,000	" 5 "	" 장교동 22-7	1,763
" 6 "	" " 22-4	2,104	" 6 "	" " 22-4	1,572
" 7 "	" 수표동 47-6	1,196	" 7 "	" 수표동 88-1	1,501
			" 8 "	" " 91-3	1,446
			" 9 "	" " 65-3	829
			" 10 "	" " 67-2	719
			" 11 "	" " 69	925
			" 12 "	" " 61	816
			" 13 "	" " 60	823
			" 14 "	" " 47-6	1,196

* 전체 면적에는 도로 및 주차장 면적 3,424 m^2 포함되어 있음.

2. 청계천 7가 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 지적 승인 조서						
당			변			
지구명	위 치	면 적	지구명	위 치	면 적	
청계천	중구 신당동 217번지	19,444㎡	전 체		19,444㎡	
7가지구	일대		청계천 7가	중구 신당동 220-17일대	3,517	
			" 1지구	" "		
			" 2 "	" " 217-15	810	
			" 3 "	" " 217-39	2,135	
			" 4 "	" " 217-34	850	
			" 5 "	" " 217-73	709	
			" 6 "	" " 204-26	1,463	
			" 7 "	" " 213-5	1,580	
			" 8 "	" " 217-57	1,320	
			" 9 "	" " 213-15	590	
			" 10 "	" " 217-70	2,470	

* 전체 면적에는 도로 및 주차장 면적 4,000㎡ 포함 되어있음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7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영동(제 2지구)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 예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

고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제 55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동 법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한다.

2. 환지계획 변경 도시는 도시정비 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.
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별도 서류 송달할것이나 미수령자
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름한다.

1976.7.

서울특별시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17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 호 (78.3.

20) 로 고시된 불광천 개수공사

구간내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

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

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

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

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

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
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8.3.

서울특별시

공 략 개 요

1. 사업장위치 : 마포구 성산동, 중동,
상암동 일원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불광천 개수
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가. B = 64m,
나. L = 1,456m
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1976.8.
20-1977.8.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토
지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
주소, 성명 : 별첨.

토 지 조 서

순위	소재지	처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마포구성산동	339-1	전	55	마포구 성산동 224	안일출
2	"	340-1	"	88	" 32	안규봉

순 위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성 명
					주 소		
3	마포구성산동	341-4	전	435	마포구 성산동 30-23		이 명 구
4	"	341-5	"	590	마포구 용강동 289		정 희 문
5	"	341-13	"	124	" "		정 영 채
6	"	385-3	"	53	마포구 성산동 237-4		김 종 식
7	"	385-5	"	174	강남구 도곡동 영동아파트6동302호		김 진 호
8	"	385-6	"	178	마포구 성산동 46		김 현 우
9	"	387-3	"	290	" " 30-23		이명구의1인
10	"	388-3	"	950	종로구 삼청동 35-88		방한성의1인
11	"	388-4	"	42	마포구 성산동 222-1		치 윤 몽
12	"	389-	"	1,194	" " 230		최 영 교
13	"	390-2	"	239	" 합정동 361-15		김 철 준
14	"	391-	"	236	" 중동 81-9		정 선 모
15	"	392-2	"	405	" 성산동 205		이문집의1인
16	"	392-3	천	277	종로구 궁천동 1-2		박 무 신
17	"	393-2	전	626	" " "		"
18	"	394-	"	28	성동구 옥천동 42		황 재 동
19	"	396-3	천	98	종로구 궁정동 1-2		박 무 신
20	"	397-	전	48	성동구 옥천동 42		황 재 동
21	"	398-3	천	96	동대문구 청량리동 205		최 예 형
22	"	405-	전	270	성동구 행당동 322		권 청 자
23	"	404-	"	114	마포구 합정동 416-17		이 성 욱
24	"	406-1	"	333	" " "		"
25	"	406-2	잡	161	성북구 수유동 275-124		이 병 석

순위	소재지	지 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26	마포구성산동	407-3	전	611	마포구 신평덕동 58	이운섭
27	"	408-7	"	800	서대문구 수색동 38-2	이춘화
28	"	409-2	"	528	마포구 성산동 12-56	이은동
29	"	410-1	"	601	" " 146	박영준
30	"	410-2	"	14		
31	"	411-	"	275	" " 12-56	이은동
32	"	412-2	"	585	" 서교동 395-95	박정호
33	"	413-5	"	327	용산구 후암동 327	이종섭
34	"	413-7	"	446	종로구 청운동 56-51	김인준외1인
35	"	413-9	"	165	마포구 중동 58	장효설
36	"	413-10	"	277	" " "	"
37	"	414-2	"	335	용산구 후암동 43-14	이종섭
38	"	415-2	대	254	서대문구 북아현동 519	박상옥
39	"	416-2	답	312	서대문구 남가좌동 175-78	안윤석
40	"	417-2	"	172	마포구 노고산동 54-20	이승훈
41	"	418-2	"	189	중구 동자동 22-32	서유홍
42	"	421-1	전	64	마포구 중동 85	장순동
43	"	421-6	답	611	" 서교동 395-62	장순걸
44	"	421-12	"	272	" 중동 496	정인오
45	"	421-13	"	8	" " 181	윤문동
46	"	421-15	"	677	서대문구 북아현동 1-1336	고극훈
47	"	421-15	"	252	마포구 성산동 496	강인범
48	"	421-16	"	556	" 동교동 39-11	홍원

순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
					주소	성명
49	마포구성산동	421-18	답	209	마포구 중동 181	조성학
50	"	422-11	"	756	" 성산동 산30-4	윤명섭
51	"	422-23	"	667	" 중동 58	장효실
52	"	422-24	"	18	서대문구 구산동 19-48	이봉려
53	"	422-25	"	199	마포구 성산동 83	김남홍
54	"	422-26	"	277	" 서교동 373-8	나은선
55	"	422-27	"	474	서대문구 연희동 73-26	정운성
56	"	422-28	"	1,046	마포구 성산동 166	김현용
57	"	422-29	"	108	" " 479	이재종
58	"	422-30	"	614	" " 496	정인오
59	"	422-31	"	101	" " 479	정인봉
60	"	423- 2	"	718	서대문구 남가좌동 155-163	최백규
61	"	433- 3	"	378	" 대신동 52-8	김형국
62	"	474- 4	전	0.7	마포구 중동 58	장을성
63	"	474- 5	"	214	" " "	"
64	"	475- 3	"	4	" " "	"
65	"	476	"	60	" " "	"
66	"	477- 2	"	122	" 상수동 93-37	박동욱
67	"	480- 2	답	4	" 공덕동 396-4	김용구
68	"	481- 3	"	357	종로구 명륜동 3가 121-2	유두희 1인
69	"	482- 2	전	436	마포구 성산동 498	정인범
70	"	483- 1	답	200	서대문구 남가좌동 175-90	김현광

순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성명
					주	소	
71	마포구성산동	483-2	답	211	서대문구대현동 56-76		마귀준
72	"	404	"	456	마포구중동 484		장순섭
73	"	485	전	73	마포구중동 58		장을성
74	"	486-2	답	339	용산구청파동 3가 118-28		박철용
75	"	489	"	78	"		"
76	"	490-4	"	342	종로구명륜동 3가 121-2		유두회 의인
77	"	526-4	"	94	중구신당동 52-203		정환승
78	"	528-2	전	0.8	마포구공덕동 175-230		김윤석 외인
79	"	537-2	"	74	서대문구수색동 537-2		장규환
80	"	542-2	"	84	마포구합정동 165-17		이성욱
81	"	558-2	답	77	성북구강위동 68-1042		조경애
82	"	560-9	전	673	서대문구연희동 363-19		김한수
83	마포구상암동	1154-2	답	60	서대문구신사동 188		김영득
84	"	1156-2	"	102	마포구중동 58		장순택
85	"	1163-2	"	17	"		"
86	"	1164-2	"	18	"		"
87	"	1165-2	"	13	"		"
88	"	1166-2	"	61	마포구상암동 34-3		김재천
89	"	1167-2	"	355	마포구중동 391		조병덕
90	"	1168	대	199	마포구상암동 34-3		김재천
91	"	1169	답	317	서대문구불광동 334-2		박정숙
92	"	1170-2	대	91	용산구보광동 253-5		지명국
93	"	1171-2	답	190	종로구충신동 25-31		허필주

순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
					주소	성명
94	마포구상암동	1172	답	611	용산구청파동3가118-28	박칠용
95		1174	"	244	"	"
96		1175	"	163	"	"
97		1176	"	201	"	"
98	마포구중동	83-2	대	11	종로구종로5가476	이병호
99	"	85-2	천	64	마포구중동85	장순섭
100	"	85-14	대	37	종로구종로5가476	이병호
101	"	85-15	대	235	"	"
102	마포구성산동	53-9	임	9908	용산구청파동3가118-28	박칠용
103	"	53-3	"	7211	"	"
104	"	53-2	"	2109	서대문구응암동3-6	김복희
105	마포구성산동	51-2	"	207	마포구성산동254-1	김성만
106	"	341-9	천	249		국
107	"	341-10	"	34		"
108	"	341-14	"	56		"
109	"	340-3	"	50		"
110	"	530-9	"	4		"
111	마포구중동	85-3	천	40		"
112	"	85-1	"	13		"
113	"	86-2	"	56		"
114	"	86-1	"	56		"
115	"	88-2	"	171		"
116	"	89-2	"	71		"

순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비고
					주소	성명	
117	마포구 중 동	66-3	천	181		국	
118	"	89-3	"	1534		시	
119	마포구성산동	481-2	"	509		"	
120	"	407-3	"	202		국	
121	"	391-2	"	234		"	
122	"	395-2	"	647		"	
123	"	407-4	"	1779		"	
124	"	490-2	구	110		시	
125	"	421-17	"	21		"	
126	"	490-5	"	5		"	
127	"	389-3	"	530		국	
128	마포구상암동	1161-1	도	2088		"	
129	마포구성산동	438-2	"	74		"	
130	"	389-4	"	106		"	
131	"	476-2	"	132		"	
132	"	490-3	"	10		"	
133	"	1175-3	"	28		시	
134	마포구상암동	1122-1	천	63		국	
135	마포구 중 동	86-13	"	24		"	
136	"	86-4	"	128		"	
137	"	86-5	"	186		"	
138	"	88-6	"	206		"	
139	마포구상암동	1125-2	"	10		"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9 호

위생업소영업허가지역재조정

정부인구 소산정책 및 보건사회부
고시제 14 호 (76.5.7) 에 따라 강

남전지역을 식품집객영업허가에 따른
개발지역으로 조정하였기 공고한다.

1976. . 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1. 변경사항

변 경 조 항	현	행	변 경
보건사회부고시 제 14 호 (76.5 7) 제 3 조 제 1 항에 의한 개발 지역	강남 14 개 개발지역 (경인, 김포, 시흥, 영동 1, 영동 2, 영동 추가, 신림, 신흠추가, 여의도, 개봉, 남서울, 화곡, 천호, 잠실등 구획정리 사업지역)		강남전지역

2. 시행일 76.8.5. 끝

◎ 성 동 구 공 고 제 179 호

동공인신조 (개각) 공고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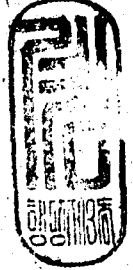


성동구산하 행당 3 동장의 공인의
마멸로 폐기하고 신조 (개각) 하여
사용토록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

고함.

1976. 7.22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1. 공인의명칭 : 성 동 구 행당제 3 동장의인
2. 사용일시 : 1976.8.2 09:00
3. 공인의인명 : 별 첨

성 동 구 행 당 제 3 동 장 인	신 조 인 영		폐 기 인 영	
	지 인	제 인	지 인	제 인
				

사 령

◎ 1976.7.24

성 동 구 지방토목 이 춘 원
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
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
감봉 1 월에 처함.

성 북 구 지방토목 조 정 구
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
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
감봉 3 월에 처함.

구획정리과 지방토목 도 언 길
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
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
감봉 3 월에 처함. (도시가스
사업소근무를 명함).

◎ 1976.7.20

영 동 포 구 지방행정 박 시 규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
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6.3.31
(발령 180 호) 징계처분 (감봉 1 월)
을 동일자로 변경 견책에 처함.

사 회 과 지방행정 김형욱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
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6.
3.31 (발령 180 호) 징계처분
(파면) 을 동일자로 변경
감봉 1 월에 처함.
동대문구근무를 명함.

◎ 1976.7.31

복 부 위 생 지방화공 안 병 남
처 리 장 기원보시보
부직을 명함.

영 동 포 구 근무를 명함.

도시계획과 지방행정 이 종 우
(직위해제중) 주 사 보
부직을 명함.

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

관 광 과 지방행정 조 만 형
주 사 보
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
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
에 처함.

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이 진 수
주 사 보
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. 2
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
처함.

성 동 구 행정주사보 이재호
국가공무원법제 79 조제 1 항 1.

<p>2,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</p> <p>시설관리과 지방행정 한 동 석 사무관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</p> <p>◎ 1976.8.2</p> <p>녹지과 지방농림 김 진 찬 기사보</p> <p>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76.3.30 (발령제 172 호) 파면 처분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6월에 처함.</p> <p>녹지과 지방농림 김 진 찬 기사보</p> <p>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 <p>◎ 1976.8.4</p> <p>친호줄장소 지방행정 정 태 산 사무관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</p>	<p>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</p> <p>도봉구 지방행정 김 한 석 사무관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에 처함.</p> <p>관악구 지방행정 장 순 무 사무관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.</p> <p>양묘장 지방행정 김 병 강 주사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</p> <p>관악구 지방행정 최 규 상 주사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에 처함.</p> <p>세무조사과 지방행정 이 중 훈 주사보</p> <p>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</p>
<p>서울특별시장</p>	
Empty space for signature or stamp	